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17

발의연월일: 2021. 3. 4.

발 의 자:서삼석・김승원・김종민

민형배 · 진성준 · 김영배

이규민 · 이학영 · 임종성

서영교 · 김민철 · 임호선

송재호 · 윤재갑 · 양정숙

장경태・박 정・윤준병

조오섭 • 박영순 • 최종윤

신정훈ㆍ허 영ㆍ황운하

김철민 · 이해식 · 김영진

이용빈 · 김주영 의원

(2991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시행령에서지정 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지정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

황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,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"를 "제4항까지"로한다.

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	제17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
지정) ① ~ ③ (생 략)	지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
	정 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
	서 정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
	부장관은 해당 산업위기대응특
	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
	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
	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
	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<u>④</u> 제1항부터 <u>제3항까지</u> 에서	<u>⑤</u>
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	
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,	
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, 지원	
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